

의안번호	2126664
의 퇴 인	김은희의원
회 답 일	2024. 5. 14.
추 계 번호	24C02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자립지원 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추가함	의무규정
2	안 제38조제3항 신설 (자립지원 사업 안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자립지원 대상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8조제3항 신설 (자립지원 사업 안내)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
-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자립지원 대상자 규모 및 향후 실시할 신규 사업의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4년 예산 59억 8,200만원)을 통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발굴, 대상자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복합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으로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북의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인제군, 서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화순군, 경주시, 거창군, 제주시의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표 1] 최근 2년간(2022~2023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세)

구 분	2022년(1년차)		2023년(2년차)	
	대상자 수	비율	대상자 수	비율
20대 미만	2	4.9	—	—
20대	16	39.0	25	32.5
30대	4	9.8	12	15.6
40대	5	12.2	11	14.3
50대	9	22.0	20	26.0
60대 이상	5	12.2	9	11.7
합 계	41	100.0	77	100.0
평균 연령	39.1		40.8	

주: 1년차는 2022~2023년 3월 기간 동안 조사 기준 수치이며, 2년차는 2023년 11월 조사 기준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비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지역별 자립정착금 지원 수준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자립 장애인 1인당 지역별 자립정착금 지원액(2023년 기준)

(단위: 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
서울시	1,500	강원도	910
부산시	1,000	충청북도	500
대구시	1,000	충청남도	1,000
인천시	800	전라북도	1,000
울산시	500	전라남도	1,000
세종시	500	경상북도	1,000
광주시	1,200	경상남도	1,000
대전시	800	제주도	1,000
경기도	1,500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윤경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윤경	02-6788-4742	yoonklee@assembly.go.kr